

부속서 3A
관세철폐계획

제1절 : 싱가포르의 관세철폐계획

제3.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, 싱가포르는 이 협정의 효력발생일부터 대한민국으로부터의 모든 원산지상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한다.

제2절 : 대한민국의 관세철폐계획

설명주석

1. 이 부속서의 관세철폐계획은 다음의 4개의 열을 포함한다.
 - 가. 2004년도 대한민국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상의 상품을 기술하기 위하여 사용된 번호를 규정하는 **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품목번호**
 - 나.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상품을 기술하는 **설명**
 - 다. 2004년 1월 1일 현재 유효한 최혜국 대우 실행관세율을 규정하는 **기준세율**
 - 라. 관세철폐의 목적상, 관련 상품이 해당하는 유형 또는 유형들을 규정하는 **유형**
 - (1) 0년은 이 협정의 효력발생일의 자유화를 규정한다.
 - (2) 5년은 5년의 이행기간에 걸친 자유화를 규정한다. 그리고
 - (3) 10년은 10년의 이행기간에 걸친 자유화를 규정한다.
2. 관세철폐계획에 0년, 5년 및 10년의 유형으로 열거된, 싱가포르를 원산지로 한 대한민국으로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다음의 일정표에 따라 균등하게 철폐된다.

연간 관세감축 백분율

유형	발효일	1년	2년	3년	4년	5년	6년	7년	8년	9년	10년
0년	100%										
5년	16.7%	33.3%	50%	66.7%	83.3%	100%					
10년	9.1%	18.2%	27.3%	36.4%	45.5%	54.5%	63.6%	72.7%	81.8%	90.9%	100%

3. 이 절의 목적상, 1년이라 함은 이 협정의 효력발생일이 한 해의 4/4분기 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, 이 협정의 발효 후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12월의 기간을 말한다. 이 협정의 발효일이 한 해의 4/4분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, 1년이라 함은 이 협정의 발효 이후 두번째 해의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12월의 기간을 말한다.

4. 이 절에 따른 관세철폐의 이행 목적상, 다음이 적용된다.

가. 첫번째 감축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발생한다. 그리고

나. 그 이후의 연간 감축은 1년 및 그 이후 매 해의 1월 1일에 발생한다.